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번호	2598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4. 11. 12.

발 의 자 : 도병두 의원

찬 성 자 : 고성미 의원, 엄셋별 의원

1. 주 문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」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“구성일로부터 2025. 6. 30.까지”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배차시간 지연 및 승객 과다승차 등 대중교통 관련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함으로써, 금천구민의 교통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3. 관련규정

- 지방자치법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-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37조(특별위원회)

관련 법령과 자치법규

[지방자치법]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
-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 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[금천구의회 기본조례]

제37조(특별위원회)

-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,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. 다만,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안전이나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-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정수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.
-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, 활동기간 종료 15일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